2016-안전-269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 제도 안내

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**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· 제출**하여 **심사 · 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**

관련근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8조 ➡ 미제출시 불이익 : **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제출대상

다음의 **"대상 업종 사업장"**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**"5개 설비 보유사업장"**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경우

업종코드	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10***	식료품 제조업
16***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20***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22***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23***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24***	1차 금속 제조업
25***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

업종코드	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261**	반도체제조업
262**	전자부품 제조업
29***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***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32***	가구 제조업
33***	기타 제품 제조업
–	–

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경우

1) 용해로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 2) 화학설비 3) 건조설비 4) 가스집합용접장치
5) 허가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『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』
※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39호 제3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) 참조

제출처 및 안내 문의처

| 제 출 처 |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| 제출서류 | 신청양식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5호 서식,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2부(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)

| 제출시기 (작업 시작 15일 전까지) **|**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· 이전 · 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

| 안내 문의처 |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(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)
– 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 ➜ 사업안내/신청 ➜ 산업안전 ➜ 제조업 등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➜ 사업안내

심사·확인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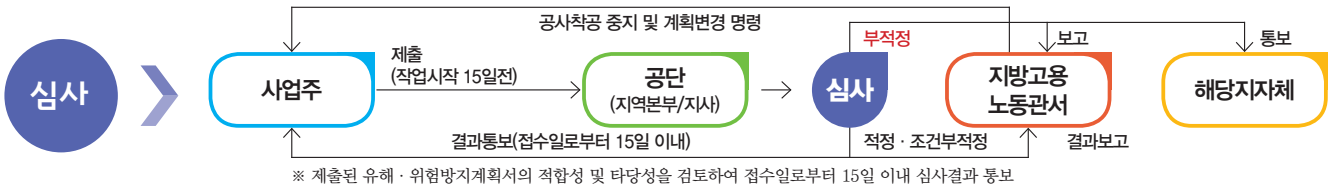

※ 제출된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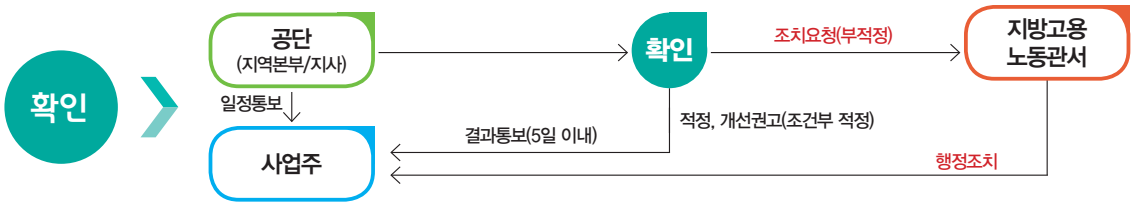

※ 확인일 : 시운전기간 중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업무 협의 안내

업무 협의 절차

✚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14조(공장의 건축허가)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승인을 받은 자(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(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할 때 해당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· 인가 · 승인 · 동의 · 심사 또는 신고(이하 "허가 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~ 14. (생 략)
1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,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의 심사
16. (생 략)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.

③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3(제조시설 설치승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
2.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

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,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·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장설립 등의 승인청" 및 "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"는 각각 "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"으로 본다.

⑤~⑥ (생 략)

✚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3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생 략)

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, 인가, 승인, 동의, 심사 또는 신고(이하 이 조에서 "승인 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
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~ 13. (생 략)
1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,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의 심사

③ (생 략)

④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업무 협의 절차

✚ 세움터 협의기관 협업시스템

① **협의 요청기관**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소재지 : 서울특별시)

② **협의 대상** : 공장 건축물 및 2종 근린 생활시설(제조업소) 전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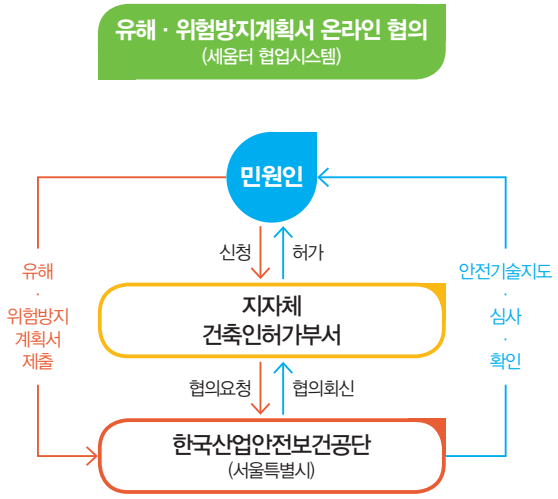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